|  |  |  |
| --- | --- | --- |
| **고체폐기물 수입 관리규정**  환경보호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령 제12호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 《고제폐기물 수입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공표하며,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보호부 부장  상무부 부장  발전개혁위원회 주임  해관총서 서장  질검총국 국장  2011년 4월 8일  **제1장 총 칙**  **제1조** 고체폐기물 수입환경 관리를 규율하고 수입 고체폐기물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고체폐기물이라 함은 생산, 생활 및 기타 활동 중에서 생성된, 기존의 이용가치를 상실했거나 비록 이용가치를 상실하지 않았지만 포기하거나 버린 고태, 반고태, 액체 및 용기중의 기타 물품, 물질, 그리고 법률, 행정법규에서 고체폐기물 관리에 넣은 물품과 물질을 가리킨다.  이 방법에서 고체폐기물 수입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의 고체폐기물을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로 들여오는 활동을 가리킨다.  **제3조** 이 방법은 임의의 방식에 의한 고체폐기물의 수입활동에 적용한다.  기증, 수출 반입, 샘플 제공 등의 방식으로 고체폐기물을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로 들여오거나, 수입 유지보수에서 생성된 미수출 고체폐기물과 수출 유지보수 또는 자재제공 가공에서 생성된 반입 고체폐기물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모두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4조**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은 양도하지 못한다.  이 방법에서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 양도라 함은 아래의 상황을 가리킨다.  (1)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매도하거나 대출, 대차하는 행위  (2) 구매하거나 차용, 임차한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사용하여 고체폐기물을 수입하는 행위  (3) 수입한 고체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에 기재한 이용기업 그 밖의 업체나 개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의 고체폐기물을 경내로 들여와 버리거나 쌓아두거나 처분하는 것을 금지한다.  고체폐기물의 중개무역을 금지한다.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수입 고체폐기물은 해관 감독관리장소에서 보관하지 못하며, 여기에는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물류단지, 보세항구 등 해관의 특별감독관리구역과 보세물류센터(A/B류), 보세창고 등 해관 보세감독관리장소(이하 해관 특별감독관리구역과 장소라 함)가 포함된다.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수입 고체폐기물은 해관 전이수속(폐지는 예외)을 하지 못한다.  **제6조**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는 통일적으로 전국 고체폐기물 수입 환경관리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상무주무부서, 국무원 경제종합거시관리부서, 해관총서 및 국무원 품질감독검사검역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고체폐기물 수입 관련 관리업무를 처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고체폐기물 수입 환경관리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각급 상무주무부서, 경제종합거시관리부서, 해관, 출입국검사검역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고체폐기물 수입에 대해 필요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는 국무원 상무주무부서, 국무원 경제종합거시관리부서, 해관총서, 국무원 품질감독검사검역부서와 회동하여 공동으로 고체폐기물 수입관리업무 조율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고체폐기물 수입관리 정보를 공유하며, 고체폐기물 수입 및 경영활동 감독관리 업무에서의 중요한 사무를 조율하고 처리한다.  **제7조** 누구든지 각급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 상무주무부서, 경제종합거시관리부서, 해관 또는 출입국검사검역부서에 고체폐기물 수입 감독관리절차와 수입 고체폐기물의 오염 조성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2장 일반 규정**  **제8조** 위험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을 통해 위험폐기물을 전이하는 것을 금지한다.  열에너지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  원료로 사용할 수 없거나 무해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없는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  경내 생성량이나 퇴적량이 많고 충분한 이용을 거치지 못한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  현재 적용하는 국가 환경보호통제표준이나 관련 기술 규범 등의 강제적 요구가 없는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  명령 인도(to order)방식으로 운송하는 고체폐기물의 입국을 금지한다.  **제9조** 경내 자원의 부족을 보충할 수 있고 국가경제, 기술조건으로 무해화 방식을 이용하여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은 그 가공 이용 과정의 오염배출 정도에 따라 수입제한과 수입 자동허가 분류관리를 실시한다.  **제10조**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는 국무원 상무주무부서, 국무원 경제종합거시관리부서, 해관총서, 국무원 품질감독검사검역부서와 공동으로 수입금지, 수입제한 및 수입 자동허가 고체폐기물 리스트를 제정, 조정하여 공포한다.  **제11조** 수입금지 리스트에 열거한 고체폐기물은 수입을 금지한다.  수입제한 또는 수입 자동허가 리스트에 열거한 고체폐기물을 수입 시에는 반드시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12조** 수입 고체폐기물은 유실, 누출, 흩날리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기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 수입 고체폐기물의 선적 운송, 신고는 해관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은 해관총서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14조** 수입 고체폐기물은 반드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입 고체폐기물 환경보호통제표준이나 관련 기술규범 등의 강제적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검사검역을 거쳐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입 고체폐기물 환경보호통제표준이나 관련 기술규범 등의 강제적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을 할 수 없다.  **제15조** 고체폐기물의 수입 신청과 심사 허가는 리스크 최소화 원칙에 따라 가까운 항구에서 통관신고를 한다.  **제16조** 국가는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입 고체폐기물의 국외 공급업체에 대한 등록등기 제도를 실시한다. 중국에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을 수출하는 국외 공급업체는 국무원 품질감독검사검역부서가 발급한 등록등기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국가는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입 고체폐기물의 국내 수하인에 대한 등록등기제도를 실시한다.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입 고체폐기물의 국내 수하인은 대외무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무원 품질감독검사검역부서가 발급한 등록등기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제17조**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는 폐기 철물이나 가전제품, 폐기 전선이나 케이블, 폐기 전기기계 등의 환경리스크가 비교적 큰 고체폐기물 가공, 이용기업에 대해 지정기업 자격인정관리를 실시한다. 관리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에서 제정한다.  **제18조** 국가는 수입제한 고체폐기물을 확정한 수입폐기물 “한정구역 관리” 단지 내에서 가공 이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수입폐기물 “한정구역 관리”는 법률, 법규 및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수입폐기물 “한정구역 관리” 단지의 건설규범과 요구는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가 국무원 상무주무부서, 국무원 경제종합거시관리부서, 해관총서, 국무원 품질감독검사검역부서와 회동하여 공동으로 제정한다.  **제19조** 수입가공구 내의 수입 고체폐기물 이용기업이 가공무역방식으로 고체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수출가공구 외의 수입 고체폐기물 이용기업이 가공무역방식으로 고체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무주무부서가 발급한 유효 《가공무역업무 허가증》, 해관이 발급한 유효 가공무역수첩(대장)과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가공무역방식으로 수입한 고체폐기물이나 가공완성품을 사유로 수출하지 않고 내수판매를 하는 경우 가공무역기업은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수입한 미가공 고체폐기물은 본 기업의 자사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 관리**  **제20조** 수입 제한목록에 나열된 고체폐기물의 수입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와 국무원 대외무역주무부서의 공동 심사 허가를 거쳐야 한다. 자동허가 수입목록에 나열된 고체폐기물의 수입은 법에 따라 자동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1조**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의 유효기간은 당 연도에 유효하다.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은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완료여부를 불문하고 기간이 지난 경우 그 효력은 스스로 상실된다.  사유로 인해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유효기간 내에 사용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이용기업은 유효기간 만기 30일 전에 증서발급기관에 연장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증서발급기관은 이미 사용한 물량을 공제한 후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다시 발급하며, 아울러 비고 난에 “연장사용”이란 단어와 원 증서번호를 기재한다.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은 1회 연장만 가능하며, 최장 60일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은 “1증 1해관” 관리를 실시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은 “비 1회 1증”제도를 실시하며, “1회 1증”제도를 실시 시에는 동시에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의 비고 난에 “1회 1증” 문자를 인쇄해야 한다.  “1증 1해관”이란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은 한 개 해관에서만 통관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키며, “1회 1증”이란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유효기간 내에 1회의 통관신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비 1회 1증”이란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그 유효기간 내에 1회 이상의 통관신고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해관은 수입물량을 일일이 기록하여 삭감하고 마지막 1회 수입 시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의 실제 잔액의 3% 내의 프리미엄 적재량을 허용함과 아울러 잔액의 유무여부를 불문하고 해관은 기록한 후 원본을 남겨 보관한다.  **제23조**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용기업은 신고절차에 따라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다시 신청, 수령해야 한다.  증서발급기관은 신청을 수리한 후 원 증서를 말소시키며, 아울러 말소한 증서번호를 공고한다.  **제24조** 수입 고체폐기물의 심사 허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장 검사검역 및 해관수속**  **제25조** 수입 고체폐기물의 운송업자는 운송 업무를 접수할 때 화물 위탁인에게 아래의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  (2)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입 고체폐기물의 국내 수하인의 등록등기증서  (3)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입 고체폐기물의 국외 공급업체의 등록등기증서  (4)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입 고체폐기물의 선적전 검사증서.  **제26조** 국무원 품질감독검사검역부서에서 지정한 선적전 검사기구는 수입 고체폐기물에 대한 선적전의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에 합격된 경우 선적전 검사증서를 제시한다.  수입한 고체폐기물이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에 기재한 항구에 도착한 후 국내 수하인은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의 검사검역 쪽, 선적전 검사증서 및 기타 필요한 증표를 지참하고 항구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 검사신고를 해야 한다.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검사검역을 거쳐 국가 환경보호통제표준이나 관련 기술규범 등의 강제적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입국화물 통관서》를 제시하고 “초보적인 검사검역을 거쳐 국가 환경보호통제표준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물질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이라고 명기하며, 국가 환경보호통제표준이나 관련 기술규범 등의 강제적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검역처리통지서를 제시하고 지체 없이 항구 해관이나 항구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항구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는 수입 고체폐기물 검사검역 불합격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이용기업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검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신청인은 수출입상품 재검사업무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국무원 품질감독검사검역부서 또는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검사업무의 실제 상황에 비추어 동급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와 회동하여 공동으로 재검사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수입제한 또는 자동허가 수입 부류에 속하는,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과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제시한 《수입화물 통관서》 등 관련 증표를 지참하고 해관에서 수입 통관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8조** 수입자가 해관이 그 수입화물을 고체폐기물 관리범위에 귀속시킨 데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또는 직접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관이 수입화물 수하인이 신고한 수입화물을 고체폐기물로 의심하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항구 검사검역부서의 고체폐기물 속성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관은 직접 항구 검사검역부서에 넘겨 고체폐기물 속성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항구 검사검역부서는 검사결과를 제시하고 고체폐기물인가를 밝혀야 한다.  해관 또는 수하인이 항구 소재지 검사검역부서의 검사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는 해관총서, 국무원 품질감독검사검역부서와 회동하여 공동으로 전문 검사기구에 의뢰하여 수입한 화물, 물품의 고체폐기물여부와 고체폐기물 부류에 대한 감별을 실시한다.  《고체폐기물 감별규칙》 및 관련 감별절차와 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가 해관총서, 국무원 품질감독검사검역부서와 회동하여 공동으로 제정한다.  검사 또는 감별기간에 해관은 기업의 담보통관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화물의 검사 또는 감별기간에 발생한 관련 비용과 손실은 화물을 수입하는 수하인이 스스로 부담한다.  이 조의 수입 고체폐기물과 관련되는 감별은 《고체폐기물 감별규칙》에 의거하여야 한다.  **제29조** 경외의 고체폐기물을 경내로 들여와 버리거나 쌓아두거나 처분하는 경우, 수입을 금지하는 고체폐기물을 수입하거나 또는 허가를 득하지 않고 제멋대로 고체폐기물을 수입한 경우, 또는 검사검역에 불합격인 수입 고체폐기물은 항구 해관이 법에 따라 수입자 또는 운송업자에게 규정한 기한 내에 관련 고체폐기물을 원 수출국에 원상 반송하도록 명령하며, 수입자 또는 운송업자는 상응하는 책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그 해관수속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수입자 또는 운송업자는 고체폐기물을 포기하지 못한다.  수하인이 확인할 수 없는 수입 고체폐기물은 운송업자가 해관에 반송 신청을 제출하거나 또는 해관이 법에 따라 운송업자에게 반송하도록 명령한다. 운송업자는 상응하는 책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그 해관수속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0조** 당사자가 고체폐기물의 반송을 거절하거나 3개월이 지나도 경외로 반송하지 아니한 경우 출입항 해관은 출입항 출입국검사검역기구와 출입항 소재지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와 회동하여 수입자와 운송업자에게 반송하도록 강제 조치를 취한다.  **제31조** 경외로 반송할 수 없거나 해관이 반송하지 않기로 결정한 고체폐기물에 대해 수입자는 해관에 신청(수입자가 불명확 시 운송업자 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제3자가 신청)하고 세관은 가까이에서 처리하는 원칙에 따라 경매 또는 위탁방식으로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에서 인정한, 무해화이용 또는 처분능력을 갖춘 업체에 넘겨 종합이용이나 무해화 처리를 할 수 있으며, 항구 체류비용과 처리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한다. 수입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운송업자가 부담한다.  종합이용 또는 무해화 처리를 위탁하여 처리비용을 공제한 후에 남은 수익은 무해화이용 또는 처리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해관을 통해 국고에 상납해야 한다. 각급 해관은 승인이 없이 국가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고체폐기물을 경매하지 못한다. 구체적 관리방법은 해관총서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와 회동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32조** 해관은 반송 등의 후속처리 상황을 출입국검사검역기구와 출입항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출입항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는 수입 고체폐기물 이용기업의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출입국검사검역기구와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관련업체를 처벌한다.  **제5장 감독관리**  **제33조** 수입한 고체폐기물은 반드시 전부 고체폐기물 수입 관련 허가증에 기재된 이용기업의 원료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34조** 수입 고체폐기물 이용기업은 환경 무해화 방식으로 수입한 고체폐기물을 가공, 이용해야 한다.  해관의 경매 또는 위탁방식에 의해 수입 고체폐기물을 이용하거나 처리하는 업체가 넘겨받은 전부 수입 고체폐기물은 반드시 종합이용 또는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한다.  **제35조** 수입 고체폐기물 이용기업은 경영상황 기록부를 작성하여 매회 수입 고체폐기물의 출처, 종류, 무게 또는 물량, 행방, 접수, 해체, 이용, 보관 시간, 운송업자의 명칭과 연락방식, 수입 구체폐기물 가공 이용 후의 잔여물 종류, 무게 또는 물량, 행방 등 상황을 여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경영기록부 및 관련 증표, 영상자료 등의 원시증빙은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수입 고체폐기물 이용기업은 오염물 배출에 대한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모니터링보고서는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수입 고체폐기물 이용기업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에 수입 고체폐기물 경영상황과 환경모니터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는 일괄 후 국무원 환경보행정주무부서에 보고한다.  고체폐기물의 수입자, 대리상, 운송업자 등 기타 경영업체는 그가 대리하는 수입 고체폐기물의 출처, 종류, 무게 또는 물량, 행방 등 상황을 기록하고 유관부서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록자료 및 관련 증표, 영상자료 등의 원시 증빙은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36조**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는 수입 고체폐기물 이용기업을 조직하여 현지 검사와 감독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를 발견한 경우에는 5일 근무일 내에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1) 관련 상황을 속이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여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신청하거나 양도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에서 규정한 오염물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총량 통제지표를 초과하여 오염물을 배출한 경우  (3) 수입 고체폐기물을 가공, 이용 후의 잔여물에 대해 무해화 이용이나 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이 규정에 따라 수입 고체폐기물 경영상황과 환경 모니터링 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는 관련 상황을 기록, 보관하여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심사 승인하는 의거로 해야 한다.  각급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 상무주무부서, 경제종합거시관리부서, 해관, 출입국검사검역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의거하여 수입 고체폐기물 관련 업체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검사대상 업체는 관련 상황을 여실하게 반영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검사기관은 검사대상 업체의 기술비밀과 업무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검사기관은 현장 검사를 실시할 때 현장모니터링, 샘플채집, 관련 자료열람 또는 복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검사요원은 현장 검사를 진행할 때 검사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6장 해관 특별감독관리구역 및 장소에 대한 특별 규정**  **제37조** 고체폐기물을 해외로부터 해관 특별감독관리구역과 현장에로 들여올 때 관련업체는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동시에 검사검역을 신청해야 한다. 고체폐기물을 해관 특별감독관리구역과 현장에서 경내의 구외로 수입하거나 또는 해관 특별감독관리구역과 장소 사이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이 없어도 가능하다.  **제38조** 해관 특별감독관리구역과 장소 내의 업체는 중개화물의 명의로 수입고체폐기물을 보관하지 못한다.  **제39조** 해관 특별감독관리구역과 장소 내의 업체에서 생성된, 해외에 반송하지 아니한 불량품, 폐기물, 찌꺼기, 수재화물 등이 수입제한 또는 자동허가 수입 고체폐기물에 속하는 경우, 그 경내 및 해관 특별감독관리구역과 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해관 특별감독관리구역과 장소 사이의 이동은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검사를 하지 아니한다.  **제40조** 해관 특별감독관리구역과 장소 내의 업체에서 생성된, 해외에 반송하지 아니한 불량품, 폐기물, 찌꺼기, 수재화물 등이 수입을 금지하는 고체폐기물에 속하여 구외 이용이나 처리가 필요한 경우 생성업체 또는 수거업체는 해관 특별감독관리구역과 장소 행정관리부서와 소재지 구를 설치한 시급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아울러 아래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고체폐기물의 구외 이전 신청서  (2) 신청업체와 접수업체가 체결한 계약서  (3) 접수업체의 연차검사를 거친 영업집조  (4) 이전하고자 하는 구내 고체폐기물의 생성과정 및 제조공정, 성분분석보고서, 물리화학성질 등기표  (5) 접수업체의 폐기물이용 또는 처리방식 설명, 이에는 폐기물이용 또는 처리시설의 장소, 유형, 처리능력 및 이용이나 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폐기, 폐수, 고형 폐기물 처리방법 등의 소개자료  (6) 접수업체가 구내 고체폐기물에 대해 환경 무해화 방식으로 이용하거나 처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구외 이동 폐기물이 위험폐기물인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업체가 소지한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아울러 접수업체의 공인을 날인해야 한다.  **제41조** 해관 특별감독관리구역과 장소의 행정관리부서,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는 구외 이동 신청을 수리한 후 구외 이동여부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리며, 승인 시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해관 특별감독관리구역과 장소의 행정관리부서,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의 승인문건을 지참하고 통관신고서를 신청하며, 그 고체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면제한다. 해관은 해관 특별감독관리구역과 장소의 행정관리부서,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의 승인 문건을 지참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한다.  **제42조** 해관 특별감독관리구역과 장소내의 업체에서 생성된 고체폐기물을 구외에서 성 행정구역을 벗어나 이전하거나 보관, 처리 시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해관 특별감독관리구역과 장소내의 업체에서 생성된 고체폐기물이 위험폐기물이나 폐기 전기전자제품에 속하는 경우, 구외로 이동 시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위험폐기물 관리 또는 폐기 전기전자제품 관리 관련 제도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7장 벌 칙**  **제43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의 고체폐기물을 수입하여 부리거나, 퇴적, 처리하거나 수입을 금지하는 고체폐기물을 수입하거나 승인이 없이 제멋대로 수입을 제한하는 고체폐기물을 수입하거나 또는 원료 이용 명의로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체폐기물을 수입한 경우 해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하며, 증서발급기관은 그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고체폐기물 수입 명의로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을 거쳐 위험폐기물을 전이한 경우 해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법적 책임을 추구하며, 증서발급기관은 그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수입 고체폐기물을 밀수한 경우 해관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제44조** 이미 불법으로 수입한 고체폐기물은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5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양도한 경우 증서발급기관은 그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취소하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제46조** 사기, 회뢰 등의 부당수단으로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증서발급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의 규정에 따라 그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취소하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제47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수입 고체폐기물을 이용한 후의 잔여물에 대해 무해화이용 또는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소재지 현급 이상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제6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를 정지시키고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증서발급기관은 그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환경오염 사고를 빚어낸 경우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8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경영상황 기록부 제도를 집행하지 아니하거나 일상적인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규정에 따라 수입 고체폐기물 경영상황과 환경모니터링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소재지 현급 이상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는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증서발급기관은 그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49조** 검사검역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고체폐기물을 수입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해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고체폐기물을 수입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해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처벌 실시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수입을 금지하거나 국가 환경보호통제표준 또는 관련 기술규범의 강제적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고체폐기물을 제멋대로 수입하여 해관으로부터 반송 명령을 받았으나 3개월이 지나도 반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0조** 수입 고체폐기물 감독관리요원이 공금을 유용하거나 뇌물을 수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또는 부정을 행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적 처분을 주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제8장 부 칙**  **제51조** 이 방법 중 구를 설치한 시급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가 행사하는 감독관리 직책은 직할시 행정구역 및 성, 자치구에서 직접 관할하는 현급 행정구역 내에서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가 행사한다.  **제52조** 고체폐기물은 국경으로 운송되기만 하면 수입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3조** 수입 고체폐기물 이용기업이란 수입 고체폐기물의 해체, 가공이용 활동에 실제 종사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제54조** 중국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역 및 중국 대만지역으로부터 수입한 고체폐기물의 수입관리는 이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55조** 이 방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무부서, 국무원 상무주무부서, 국무원 경제종합거리관리부서, 해관총서, 국무원 품질감독검사검역부서에서 이 방법을 시행하기 전에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발표한 수입 고체폐기물 관리 관련 규정, 통지가 이 방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 방법을 준용한다. |  | **固体废物进口管理办法**  环境保护部、商务部、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海关总署、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令第12号  　　根据《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和有关法律、行政法规，制定《固体废物进口管理办法》。现予公布，自2011年8月1日起施行。  　　　　　　　　　　　　　　　　　　　　　　　　　　　　　　　　　　　　　　　环境保护部部长  商务部部长  发展改革委主任  海关总署署长  质检总局局长  　　　　　　　　二○一一年四月八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固体废物进口环境管理，防止进口固体废物污染环境，根据《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和有关法律、行政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固体废物，是指在生产、生活和其他活动中产生的丧失原有利用价值或者虽未丧失利用价值但被抛弃或者放弃的固态、半固态、液态和置于容器中的气态的物品、物质以及法律、行政法规规定纳入固体废物管理的物品、物质。  　　本办法所称固体废物进口，是指将中华人民共和国境外的固体废物运入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活动。  **第三条**　本办法适用于以任何方式进口固体废物的活动。  　　通过赠送、出口退运进境、提供样品等方式将固体废物运入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进境修理产生的未复运出境固体废物以及出境修理或者出料加工中产生的复运进境固体废物的，除另有规定外，也适用本办法。  **第四条**　禁止转让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  　　本办法所称转让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是指：  　　（一）出售或者出租、出借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  　　（二）使用购买或者租用、借用的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进口固体废物；  　　（三）将进口的固体废物全部或者部分转让给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载明的利用企业以外的单位或者个人。  **第五条**　禁止中华人民共和国境外的固体废物进境倾倒、堆放、处置。  　　禁止固体废物转口贸易。  　　未取得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的进口固体废物不得存入海关监管场所，包括保税区、出口加工区、保税物流园区、保税港区等海关特殊监管区域和保税物流中心（A/B型）、保税仓库等海关保税监管场所（以下简称“海关特殊监管区域和场所”）。  　　除另有规定外，进口固体废物不得办理转关手续（废纸除外）。  **第六条**　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对全国固体废物进口环境管理工作实施统一监督管理。国务院商务主管部门、国务院经济综合宏观调控部门、海关总署和国务院质量监督检验检疫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固体废物进口相关管理工作。  　　县级以上地方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对本行政区域内固体废物进口环境管理工作实施监督管理。各级商务主管部门、经济综合宏观调控部门、海关、出入境检验检疫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对固体废物进口实施相关监督管理。  　　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商务主管部门、国务院经济综合宏观调控部门、海关总署、国务院质量监督检验检疫部门建立固体废物进口管理工作协调机制，实行固体废物进口管理信息共享，协调处理固体废物进口及经营活动监督管理工作的重要事务。  **第七条**　任何单位和个人有权向各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商务主管部门、经济综合宏观调控部门、海关和出入境检验检疫部门，检举违反固体废物进口监管程序和进口固体废物造成污染的行为。  **第二章　一般规定**  **第八条**　禁止进口危险废物。禁止经中华人民共和国过境转移危险废物。  　　禁止以热能回收为目的进口固体废物。  　　禁止进口不能用作原料或者不能以无害化方式利用的固体废物。  　　禁止进口境内产生量或者堆存量大且尚未得到充分利用的固体废物。  　　禁止进口尚无适用国家环境保护控制标准或者相关技术规范等强制性要求的固体废物。  　　禁止以凭指示交货（TO ORDER）方式承运固体废物入境。  **第九条**　对可以弥补境内资源短缺，且根据国家经济、技术条件能够以无害化方式利用的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按照其加工利用过程的污染排放强度，实行限制进口和自动许可进口分类管理。  **第十条**　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商务主管部门、国务院经济综合宏观调控部门、海关总署、国务院质量监督检验检疫部门制定、调整并公布禁止进口、限制进口和自动许可进口的固体废物目录。  **第十一条**　禁止进口列入禁止进口目录的固体废物。  　　进口列入限制进口或者自动许可进口目录的固体废物，必须取得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  **第十二条**　进口固体废物应当采取防扬散、防流失、防渗漏或者其他防止污染环境的措施。  **第十三条**　进口固体废物的装运、申报应当符合海关规定，有关规定由海关总署另行制定。  **第十四条**　进口固体废物必须符合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环境保护控制标准或者相关技术规范等强制性要求。经检验检疫，不符合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环境保护控制标准或者相关技术规范等强制性要求的固体废物，不得进口。  **第十五条**　申请和审批进口固体废物，按照风险最小化原则，实行“就近口岸”报关。  **第十六条**　国家对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的国外供货商实行注册登记制度。向中国出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的国外供货商，应当取得国务院质量监督检验检疫部门颁发的注册登记证书。  　　国家对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的国内收货人实行注册登记制度。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的国内收货人在签订对外贸易合同前，应当取得国务院质量监督检验检疫部门颁发的注册登记证书。  **第十七条**　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对加工利用进口废五金电器、废电线电缆、废电机等环境风险较大的固体废物的企业，实行定点企业资质认定管理。管理办法由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制定。  **第十八条**　国家鼓励限制进口的固体废物在设定的进口废物“圈区管理”园区内加工利用。  　　进口废物“圈区管理”应当符合法律、法规和国家标准要求。进口废物“圈区管理”园区的建设规范和要求由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商务主管部门、国务院经济综合宏观调控部门、海关总署、国务院质量监督检验检疫部门制定。  **第十九条**　出口加工区内的进口固体废物利用企业以加工贸易方式进口固体废物的，必须持有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  　　出口加工区以外的进口固体废物利用企业以加工贸易方式进口固体废物的，必须持有商务主管部门签发的有效的《加工贸易业务批准证》、海关核发的有效的加工贸易手册（帐册）和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  　　以加工贸易方式进口的固体废物或者加工成品因故无法出口需内销的，加工贸易企业无须再次申领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未经加工的原进口固体废物仅限留作本企业自用。  **第三章　固体废物进口许可管理**  **第二十条**　进口列入限制进口目录的固体废物，应当经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对外贸易主管部门审查许可。进口列入自动许可进口目录的固体废物，应当依法办理自动许可手续。  **第二十一条**　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当年有效。  　　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应当在有效期内使用，无论是否使用完毕逾期均自行失效。  　　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因故在有效期内未使用完的，利用企业应当在有效期届满30日前向发证机关提出延期申请。发证机关扣除已使用的数量后，重新签发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并在备注栏中注明“延期使用”和原证证号。  　　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只能延期一次，延期最长不超过60日。  **第二十二条**　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实行“一证一关”管理。一般情况下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为“非一批一证”制，如要实行“一批一证”，应当同时在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备注栏内打印“一批一证”字样。  　　“一证一关”指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只能在一个海关报关；“一批一证”指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在有效期内一次报关使用；“非一批一证”指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在有效期内可以多次报关使用，由海关逐批签注核减进口数量，最后一批进口时，允许溢装上限为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实际余额的3%，且不论是否仍有余额，海关将在签注后留存正本存档。  **第二十三条**　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上载明的事项发生变化的，利用企业应当按照申请程序重新申请领取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  　　发证机关受理申请后，注销原证，并公告注销的证书编号。  **第二十四条**　进口固体废物审批管理所需费用，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第四章　检验检疫与海关手续**  **第二十五条**　进口固体废物的承运人在受理承运业务时，应当要求货运委托人提供下列证明材料：  　　（一）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  　　（二）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国内收货人注册登记证书；  　　（三）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国外供货商注册登记证书；  　　（四）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装运前检验证书。  **第二十六条**　对进口固体废物，由国务院质量监督检验检疫部门指定的装运前检验机构实施装运前检验；检验合格的，出具装运前检验证书。  　　进口的固体废物运抵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列明的口岸后，国内收货人应当持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报检验检疫联、装运前检验证书以及其他必要单证，向口岸出入境检验检疫机构报检。  　　出入境检验检疫机构经检验检疫，对符合国家环境保护控制标准或者相关技术规范等强制性要求的，出具《入境货物通关单》，并备注“经初步检验检疫，未发现不符合国家环境保护控制标准要求的物质”；对不符合国家环境保护控制标准或者相关技术规范等强制性要求的，出具检验检疫处理通知书，并及时通知口岸海关和口岸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  　　口岸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收到进口固体废物检验检疫不合格的通知后，应当及时通知利用企业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和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  　　对于检验结果不服的，申请人应当根据进出口商品复验工作的有关规定申请复验。国务院质量监督检验检疫部门或者出入境检验检疫机构可以根据检验工作的实际情况，会同同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共同实施复验工作。  **第二十七条**　除另有规定外，对限制进口类或者自动许可进口类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应当持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和出入境检验检疫机构出具的《入境货物通关单》等有关单证向海关办理进口验放手续。  **第二十八条**　进口者对海关将其所进口的货物纳入固体废物管理范围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也可以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  　　海关怀疑进口货物的收货人申报的进口货物为固体废物的，可以要求收货人送口岸检验检疫部门进行固体废物属性检验，必要时，海关可以直接送口岸检验检疫部门进行固体废物属性检验，并按照检验结果处理。  　　口岸检验检疫部门应当出具检验结果，并注明是否属于固体废物。  　　海关或者收货人对口岸所在地检验检疫部门的检验结论有异议的，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会同海关总署、国务院质量监督检验检疫部门指定专门鉴别机构对进口的货物、物品是否属于固体废物和固体废物类别进行鉴别。  　　《固体废物鉴别导则》及有关鉴别程序和办法由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会同海关总署、国务院质量监督检验检疫部门制定。  　　检验或者鉴别期间，海关不接受企业担保放行的申请。对货物在检验或者鉴别期间产生的相关费用以及损失，由进口货物的收货人自行承担。  　　本条所涉进口固体废物的鉴别，应当以《固体废物鉴别导则》为依据。  **第二十九条**　将境外的固体废物进境倾倒、堆放、处置的，进口属于禁止进口的固体废物或者未经许可擅自进口固体废物的，以及检验不合格的进口固体废物，由口岸海关依法责令进口者或者承运人在规定的期限内将有关固体废物原状退运至原出口国，进口者或者承运人承担相应责任和费用，并不免除其办理海关手续的义务，进口者或者承运人不得放弃有关固体废物。  　　收货人无法确认的进境固体废物，由承运人向海关提出退运申请或者可以由海关依法责令承运人退运。承运人承担相应责任和费用，并不免除其办理海关手续的义务。  **第三十条**　对当事人拒不退运或者超过3个月不退运出境的固体废物，口岸海关会同口岸出入境检验检疫机构和口岸所在地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对进口者或者承运人采取强制措施予以退运。  **第三十一条**　对确属无法退运出境或者海关决定不予退运的固体废物，经进口者向口岸海关申请（进口者不明时由承运人或者负有连带责任的第三人申请），参考就近原则，由海关以拍卖或者委托方式移交省、自治区、直辖市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认定的具有无害化利用或者处置能力的单位进行综合利用或者无害化处置，相关滞港费用和处置费用由进口者承担，进口者不明的由承运人承担。  　　对委托综合利用或者无害化处置扣除处理费用后产生的收益，应当由具有无害化利用或者处置能力的单位交由海关上缴国库。各级海关未经批准，不得拍卖国家禁止进口的固体废物。具体管理办法由海关总署会同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另行制定。  **第三十二条**　海关应当将退运等后续处理情况通报出入境检验检疫机构和口岸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  　　口岸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通知进口固体废物利用企业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和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  　　出入境检验检疫机构和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根据具体情况对有关单位做出处理。  **第五章　监督管理**  **第三十三条**　进口的固体废物必须全部由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载明的利用企业作为原料利用。  **第三十四条**　进口固体废物利用企业应当以环境无害化方式对进口的固体废物进行加工利用。  　　由海关以拍卖或者委托方式移交处理的进口固体废物的利用或者处置单位，必须对所承担的进口固体废物全部进行综合利用或者无害化处置。  **第三十五条**　进口固体废物利用企业应当建立经营情况记录簿，如实记载每批进口固体废物的来源、种类、重量或者数量、去向，接收、拆解、利用、贮存的时间，运输者的名称和联系方式，进口固体废物加工利用后的残余物种类、重量或者数量、去向等情况。经营记录簿及相关单据、影像资料等原始凭证应当至少保存5年。  　　进口固体废物利用企业应当对污染物排放进行日常定期监测。监测报告应当至少保存5年。  　　进口固体废物利用企业应当按照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的规定，定期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报告进口固体废物经营情况和环境监测情况。省、自治区、直辖市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汇总后报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  　　固体废物的进口者、代理商、承运人等其他经营单位，应当记录所代理的进口固体废物的来源、种类、重量或者数量、去向等情况，并接受有关部门的监督检查。记录资料及相关单据、影像资料等原始凭证应当至少保存3年。  **第三十六条**　省、自治区、直辖市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组织对进口固体废物利用企业进行实地检查和监督性监测，发现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在5个工作日内报知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  　　（一）隐瞒有关情况或者提供虚假材料申请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或者转让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  　　（二）超过国家或者地方规定的污染物排放标准，或者超过总量控制指标排放污染物；  　　（三）对进口固体废物加工利用后的残余物未进行无害化利用或者处置；  　　（四）未按规定报告进口固体废物经营情况和环境监测情况，或者在报告时弄虚作假。  　　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将有关情况记录存档，作为审批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的依据。  　　各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商务主管部门、经济综合宏观调控部门、海关、出入境检验检疫部门，有权依据各自的职责对与进口固体废物有关的单位进行监督检查。  　　被检查的单位应当如实反映情况，提供必要的材料。检查机关应当为被检查的单位保守技术秘密和业务秘密。  　　检查机关进行现场检查时，可以采取现场监测、采集样品、查阅或者复制相关资料等措施。  检查人员进行现场检查，应当出示证件。  **第六章　海关特殊监管区域和场所的特别规定**  **第三十七条**　固体废物从境外进入海关特殊监管区域和场所时，有关单位应当申领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并申请检验检疫。固体废物从海关特殊监管区域和场所进口到境内区外或者在海关特殊监管区域和场所之间进出的，无需办理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  **第三十八条**　海关特殊监管区域和场所内单位不得以转口货物为名存放进口固体废物。  **第三十九条**　海关特殊监管区域和场所内单位产生的未复运出境的残次品、废品、边角料、受灾货物等，如属于限制进口或者自动许可进口的固体废物，其在境内与海关特殊监管区域和场所之间进出，或者在海关特殊监管区域和场所之间进出，免于提交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出入境检验检疫机构不实施检验。  **第四十条**　海关特殊监管区域和场所内单位产生的未复运出境的残次品、废品、边角料、受灾货物等，如属于禁止进口的固体废物，需出区进行利用或者处置的，应当由产生单位或者收集单位向海关特殊监管区域和场所行政管理部门和所在地设区的市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提出申请，并提交如下申请材料：  　　（一）转移固体废物出区申请书；  　　（二）申请单位和接收单位签订的合同；  　　（三）接收单位的经年检合格的营业执照；  　　（四）拟转移的区内固体废物的产生过程及工艺、成分分析报告、物理化学性质登记表；  　　（五）接收单位利用或者处置废物方式的说明，包括废物利用或者处置设施的地点、类型、处理能力及利用或者处置过程中产生的废气、废水、废渣的处理方法等的介绍资料；  　　（六）证明接收单位能对区内固体废物以环境无害化方式进行利用或者处置的材料；出区废物是危险废物的，须提供接收单位所持的《危险废物经营许可证》复印件，并加盖接收单位章。  **第四十一条**　海关特殊监管区域和场所行政管理部门和所在地设区的市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受理出区申请后，作出准予或者不准予出区的决定，批准文件有效期1年。  　　出入境检验检疫机构凭海关特殊监管区域和场所行政管理部门和所在地设区的市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批准文件办理通关单，并对固体废物免于实施检验。海关凭海关特殊监管区域和场所行政管理部门和所在地设区的市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批准文件按规定办理有关手续。  **第四十二条**　海关特殊监管区域和场所内单位产生的固体废物，出区跨省转移、贮存、处置的，须按照《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第二十三条的规定向有关省、自治区、直辖市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提出申请。  　　海关特殊监管区域和场所内单位产生的固体废物属于危险废物或者废弃电器电子产品的，出区时须依法执行危险废物管理或者废弃电器电子产品管理的有关制度。  **第七章　罚　则**  **第四十三条**　违反本办法规定，将中华人民共和国境外的固体废物进境倾倒、堆放、处置，进口属于禁止进口的固体废物或者未经许可擅自进口限制进口的固体废物，或者以原料利用为名进口不能用作原料的固体废物的，由海关依据《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第七十八条的规定追究法律责任，并可以由发证机关撤销其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  　　违反本办法规定，以进口固体废物名义经中华人民共和国过境转移危险废物的，由海关依据《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第七十九条的规定追究法律责任，并可以由发证机关撤销其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  　　违反本办法规定，走私进口固体废物的，由海关按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进行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四十四条**　对已经非法入境的固体废物，按照《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第八十条的规定进行处理。  **第四十五条**　违反本办法规定，转让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的，由发证机关撤销其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四十六条**　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取得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的，依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的规定，由发证机关撤销其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四十七条**　违反本办法规定，对进口固体废物加工利用后的残余物未进行无害化利用或者处置的，由所在地县级以上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根据《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第六十八条第（二）项的规定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改正，并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逾期拒不改正的，可以由发证机关撤销其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造成污染环境事故的，按照《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第八十二条的规定办理。  **第四十八条**　违反本办法规定，未执行经营情况记录簿制度、未履行日常环境监测或者未按规定报告进口固体废物经营情况和环境环境监测情况的，由所在地县级以上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可以并处3万元以下罚款；逾期拒不改正的，可以由发证机关撤销其固体废物进口相关许可证。  **第四十九条**　违反检验检疫有关规定进口固体废物的，按照《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等规定进行处罚。  　　违反海关有关规定进口固体废物的，按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和《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等规定进行处罚。  　　擅自进口禁止进口、不符合国家环境保护控制标准或者相关技术规范强制性要求的固体废物，经海关责令退运，超过3个月怠于履行退运义务的，由海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的规定进行处罚。  **第五十条**　进口固体废物监督管理人员贪污受贿、玩忽职守、徇私舞弊或者滥用职权，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八章　附　则**  **第五十一条**　本办法中由设区的市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行使的监管职责，在直辖市行政区域以及省、自治区直辖的县级行政区域内，由省、自治区、直辖市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行使。  **第五十二条**　固体废物运抵关境即视为进口行为发生。  **第五十三条**　进口固体废物利用企业是指实际从事进口固体废物拆解、加工利用活动的企业。  **第五十四条**　来自中国香港、澳门特别行政区和中国台湾地区固体废物的进口管理依照本办法执行。  **第五十五条**　本办法自2011年8月1日起施行。  　　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国务院商务主管部门、国务院经济综合宏观调控部门、海关总署、国务院质量监督检验检疫部门在本办法实施前根据各自职责发布的进口固体废物管理有关规定、通知与本办法不一致的，以本办法为准。 |